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33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 박홍근 · 권칠승 · 김홍걸

이타희 • 이학영 • 주철현

이헌승 • 전용기 • 한정애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 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유기·유실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거 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자발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전국적으로 150 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 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 제가 된 바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동물보호단체 등의 신고)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구조·보호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동물보호단체등"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단체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동물을 관리하거나 분양하여야 하고, 제22조를 준용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의2에 따른 동물보호단체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동물보호단체 등의 신
	고)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 구조・보호하려는 사
	람 또는 단체(이하 "동물보호단
	체등"이라 한다)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동물
	을 관리하거나 분양하여야 하
	고, 제22조를 준용하여 인도적
	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①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	
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15조의2에 따른 동물보
	호단체등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② ~ ④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

 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신 설>

<신 설>

8. ~ 15. (생략)

③ • ④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u>(2)</u>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 하지 아니한 자
- 7.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 8. ~ 15.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